

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

등록번호			모집기간	
모집자 (개인 또는 법인·단체)	성명 또는 법인·단체명		생년월일 또는 법인(사업자)등록번호	
	법인·단체의 대표자 성명			
	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		(전화번호:)	
모집목적				
모집등록금액				

1. 기부금품 모집 명세

(단위: 원)

연월 (00-00)	모집방법	기부금 및 유가증권 등				기부물품				기부금품 합계	모집등록금액 대비 비율(%)
		종류	단가	수량	총액 (가액)	품명	단가	수량	물품총액 (가액)		
총계											

※ 작성방법

- ‘모집방법’란에는 계좌이체, 자동응답시스템(ARS), 현장접수, 모금함 및 기타 중 해당되는 것을 적습니다.
- ‘기부금 및 유가증권 등’란에는 기부자로부터 모집한 금전, 주식, 유가증권 및 예금이자, 주식 배당금 등을 적습니다.
- ‘총계’란 중 음영부분은 적지 않습니다.

2. 기부금품 사용 명세

(단위: 원)

연월일 (00-00-00)	(대표)사용처명 (성명/단체명/상호)	용도	사용목적	사용액			
				현금	유가증권 등	물품	합계
총계							

※ 작성방법

- ‘용도’란에는 ‘사업수행비용’과 ‘모집비용’으로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.
- ‘사용목적’란에는 용도가 ‘사업수행비용’인 경우에는 모집목적에 위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, ‘모집비용’인 경우에는 아래의 비목을 적습니다.
 - * 모집목적에 위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예시: 미래인재개발 장학금, 사회취약계층 자녀돌봄 및 학업지원, 노인요양시설 의료지원 및 의약품 제공 등
 - * 비목 구분 기준: 인건비, 임차비, 홍보비, 세금·공과금, 소모품비, 지급수수료, 기타
- ‘총계’란 중 음영부분은 적지 않습니다.

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일	년	월	일
-------------------	---	---	---

첨부: 1. 「공인회계사법」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 1부(기부금품 모집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

2. 기부금품 사용에 따른 영수증 등 지출증명서류(기부금품 모집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

「기부금품의 모집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명세를 보고합니다.

년 월 일

모집자

(서명 또는 인)

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 귀하